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83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용어 등이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아 정비의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함(안 제2조).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 한 사람 중에서 위촉

- (2)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
-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위촉시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 나. 의결 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조)
 -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2)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 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ykh50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 2. 4명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자치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 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
- 제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 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 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대전

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로 한다.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에 관한 사항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 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 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한다. 〈개정 2011.7.29.〉
-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제21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 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0.28]

- ②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4. 법 제24조,제24조의2,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1.10.28]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28]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28] [전문개정 2009.2.3] [본조제목개정 2011.10.28]